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 안 번 호	65
------------	----

제출일자 : 2002. 12. 12.
제출자 : 기획감사담당관

1. 제정이유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은 사천시 기금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는 우수학생 장학사업, 우수고등학교육성사업과 기타 우수학생 및 우수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 등에 사용함(안 제5조)
- 다. 기금의 지급대상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시와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등으로 함(안 제8조)
- 라. 기금의 지급범위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장학금, 교사는 포상금,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는 상사업비 등으로 하고, 지급기준은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함(안 제10조)
- 마. 장학금은 매 학년의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하고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 매 학년도 상반기중에 지급 결정함(안 제10조)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02. 10. 21 ~ 2002. 11. 9(20일간)
- 나. 예고방법 : 일간신문 계재(경남도민일보와 2개사)
- 다. 접수된 의견 : 붙임
- 라. 접수의견 반영 : 일부 반영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우수한 학생과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우수 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조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시 기금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전출금으로 매 회 계년도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하되,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의 집행은 당해년도 수입금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우수학생 장학사업
 2.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3. 기타 우수학생 및 우수고등학교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 ②기금은 목적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일 이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주사

제8조(기금 지급대상) 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학교로 한다.

1. 우수한 시험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2. 중학교 졸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3. 우수학생을 육성한 교사
4.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권이내에 입상한 학교
5. 기타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 학생

6.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

제9조(기금의 지급 범위) ①기금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장학금
2. 대학생 : 장학금
3. 교사 : 포상금
4.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 상사업비
5. 기타 : 상사업비 또는 장학금

②기금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학생에게는 매 학년의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교사 및 올해의 우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포상금 및 상사업비는 매학년 상반 기중에 지급결정을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학·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고등학생의 경우 타 시도, 타 시군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3. 기타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제12조(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 ①매년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상사업비를 지급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과는 별도로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여 학교발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3조(명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과 교육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회의원, 교육계, 언론계, 지역업체, 연구기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 저명인사, 시 소속공무원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5조(고문)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지급기준
2.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기준 설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 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심의
3.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기획 · 조정
4.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 심의
5. 기타 우수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제1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1조(수당 등 경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